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404

발의연월일: 2024. 11. 8.

발 의 자: 박해철 • 박지원 • 박홍배

추미애 · 송옥주 · 이재정

복기왕 • 맹성규 • 김 현

김병기 · 허성무 · 이광희

김남근 • 김 윤 • 권향엽

최민희 • 강유정 • 송재봉

김주영 • 이병진 • 김성환

황명선 의원(2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하천·호소 등의 공공수역에 유류·유독물·농약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누출·유출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누출·유출하거나 버린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유류·유독물·농약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운송·보관 중인 자가 수질을 오염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도록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누출·유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제재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수질오염 발생위험에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1천만원의 과태료를 신설함으로써 누출·유출 신고의무에 대한 규범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1 항제2호의3 신설). 법률 제 호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1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제1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82조(과태료)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의2. (생 략)	1. ~ 2의2. (현행과 같음)		
<u><신 설></u>	2의3. 제16조에 따른 신고를 하		
	<u>지 아니한 자</u>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